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관세법」 제51조에 따른 「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행정예고(2024. 4. 11. ~ 4. 22.) 예정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「이집트산 백신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
연장」 폐지안

「이집트산 백신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」(기획재정부고시 제2024-6호, 2024.3.14.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